

월요광장



정 봉 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독서의 달 9월, 지난 한 주는 ‘금서 읽기 주간’(BBW, Banned Books Week)이었다. “괜찮아, 내가 읽고 싶은 걸 읽어. 누구나 어디서나 읽고 싶은 걸 읽을 권리가 있어”라는 포스터를 내걸고 전국의 공공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서 역사상 금서가 되었던 책을 읽고 토론을 했다. 표현의 자유, 독서와 도서관의 자유를 생각하면서, 동서고금 ‘읽지 말라!’던 책들은 참으로 많았다. 고전으로 손꼽히는 ‘에밀’ ‘사회계약론’ ‘베니누스의 상인’ ‘짧은 베르테르의 슬픔’ ‘군주론’ ‘신곡’ ‘역사란 무엇인가’ ‘율리시즈’ ‘죄와 벌’ ‘아류정전’ ‘1984’ 등은 당시의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금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오신화’ ‘홍길동전’ ‘열하일기’가 그랬다. 백석 시인의 시집 ‘사슴’은 시인이 월북 작가로 분류되는 바람에 1988년 까지 금서였는데, 백석은 월북 작가가 아니라 고향이 북쪽이라 그냥 거기 있었을

괜찮아, 읽고 싶은 걸 읽어!

뿐이다. 어린이 책도 예외는 아니다. ‘아기공룡 둘리’는 어른에게 말대꾸하고 아이들 버릇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불량 만화의 대명사로 취급받았다. 어린이 문학의 고전에 속하는 ‘몽실언니’는 100만 부 이상 팔렸는데도 용공 서적으로 지목되어 금서가 되었다. 현대 그림책의 고전으로 불리는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귀여운 주인공과 자상한 엄마가 등장하는 동화의 전형을 깨트렸다는 이유로, 에릭 칼의 ‘갈색 곰아, 갈색 곰아, 무엇을 보고 있니?’는 글을 쓴 ‘빌 마틴 주니어’가 좌파 철학자라는 이유로 금서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동맹이인이었다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샌드럴파크 동물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랑해 너무나 너무나’는 2005년 출간 이후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주관하는 금서 목록에 가장 많이 올랐지만, 입양에 의한 새로운 가족을 구한 따스한 그림책으로 찬사를 받는 작품이기도 하다. 금서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출판되는 모든 책을 검열해 권력을 비판하면 금서로 지정했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1987년 이후에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사상 관련 책들이 탄압을 받아 왔다. 2008년에는 국방부에서 불온서적 목록을 만들어 논란이 되기도 했고 학교 추천 도서

가 좌편향 됐다는 일부 보수 단체의 주장에 근거해 정부와 교육청이 추천 도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일도 있다. “대체 무엇이 ‘불온’하다는 것인가? 기성 가치의 타당성을 의심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불온’이었다. 각도를 달리해 보면 ‘불온서적’ 또는 금서란 존재는, 그것을 억압한 기득권층의 결합이나 그들의 역린(逆鱗)을 투사하는 부정의 자화상이었다.”(백승중) 어떤 사상이 옳으나 하는 것을 검열관이 판정할 수는 없는 일. 그것은 자유로운 논쟁과 독자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니다. 독자는 ‘책에 대한 자기 이해를 갖는 사람’이다. 책을 읽고 독자가 가질 생각까지 염려하고, 독자가 가진 은밀한 생각을 교육이라는 이유로 들여다보거나 한 가지 생각으로 몰아가는 것은 독자의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이런 ‘불편하고 불쾌하며 불행한 현실’에 맞서 독자들은 금서의 울타리를 허물고 지적 자유의 확대를 위해 외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러 변형된 형태의 검열은 사회적으로 자기 검열의 기제를 확대한다는 데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억압에 의해 드러워진 두려움의 그림자로 인해 검열이나 논란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자발적으로 표현을 제한하게 될 테니까. 순응에 대한 압력, 그 압력에 의해 조성되는 사회적 긴장은 표현

의 자유와 사상의 다양성을 제한하여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다. 광주비엔날레의 ‘세월오월’ 작품 전시 취소,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다규영화 상영 후 예산 삭감,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인한 사이버 명예 열풍, 서울연극제의 거리 폐막식이 바로 그것의 일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같은 맥락이었으니 일일이 기록하기도 벅찰 정도다. 무릇 책 읽기는 자유로워야 한다. 이것이 독서의 본질이다. 어떤 표현이나 저자의 특성이 비판적이거나 위험하다는 꼬리표를 붙이고 독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읽는지는 매우 중요하고 사상은 위험할 수는 있지만 사상의 억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금서 읽기 주관을 통해 책 읽기의 자유와 독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한다. “책을 읽지 않을 권리, 건너뛰며 읽을 권리,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다시 읽을 권리,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보바리즘을 누릴 권리, 아무 데서나 읽을 권리, 군데군데 골라 읽을 권리, 소리 내서 읽을 권리,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다니엘 페나크, ‘소설치럼’) 무엇을 어떻게 읽든 침해할 수 없는 독자의 권리와 도서관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기틀이

법조칼럼



조 선 히  
변호사

#1. A씨는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다. A씨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A씨는 아버지 사망 당시 아버지의 재산상태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상속을 단순 승인을 해 아버지의 채무를 고스란히 상속하게 된 것이다.

#2. B씨는 최근 미혼인 동생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모 대출회사로부터 동생이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으며, 산재 보험금을 상속받은 것조차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동생의 채무 등 재산 현황을 알 길이 없어 답답해 하고 있다.

#3. C씨는 부친 사망후 바로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허가를 받긴 했지만, 이후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빚을 청산하

알아 두면 쓸데 있는 망자의 재산 정리법

는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 C씨는 부친의 채권자에게 자신이 한정승인한 사실을 알리고 채권액을 알려달라는 공고를 해야 했다. 이후 채권액이 정해지면 배당액을 정하고 변제를 했다. 유산을 경매로 밖에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마음대로 빚을 갚을 수도 없었다.

#4. D씨는 갑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뒤늦게 갑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고 1순위 상속인인 갑의 자녀들을 찾아 이들을 상대로 소송 수계 신청을 했다. 그러자 갑의 자녀들, 다음 순위 상속인인 갑의 형제들은 상속을 포기했다. D씨는 일일이 가족 관계등록부를 통한 확인 작업을 거쳐서 다음 후순위 상속자를 찾는데 무려 1년7개월을 허비하다가, 결국 5000만원을 포기했다.

A씨, B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상속인들이 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있다.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재산 처분 등 상속처리를 위해 6종(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은행·보험 등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한방의 통합 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들은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가지고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을 방문

하여 정부 3.0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7~20일 이내에 문자 등으로 재산조회 결과를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또 C씨와 D씨의 경우 상속인들은 망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상속의 ‘단순 승인’을 할 것이지, 아니면 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아니하는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망자의 재산의 한도에서 망자의 채무를 승계하는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망자가 채무 초과 상태인 것을 확인한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이 망자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흔히 한정 승인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한정 승인 결정을 받더라도 C씨처럼 복잡한 청산 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재산 파산제도’다. 상속인과 상속채권자는 물론 유증을 받은 자와 유언집행자도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특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과 상속채권자에게 가장 유용하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관할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추가로 신청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빚 변제를 대신 해준다. 따라

서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와 최고 의무도 없고, 만에 하나 채무를 잘못 변제할 경우 저야 할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지 않고도 관할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면 자동으로 한정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약 파산 신청이 기각이 되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고인이 남긴 빚 모두를 상속하겠다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먼저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을 신청한 다음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채권자들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막연히 상속을 단순 승인하거나 고인의 빚이 유산보다 많을까 두려워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속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정부 3.0 안심상속 제도’를 이용하여 망인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 결과 망자가 채무 초과 상태로 확인되면 ‘한정 승인’과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들인 다른 가족들의 수고와 채권자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社說

SOC 이어 도시재생 사업까지 역차별 받아

올해부터 추진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너무 커 재정 이 열악한 광주·전남 지역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5대 5여서 공간이 빈약한 광주·전남은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 재생 뉴딜은 쇠락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방식은 노후 주거지를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민의 뜻을 반영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지, 노후 산업단지, 역세권 등 110개소를 선정해 5개 유형별로 50억 원에서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5년 간 500곳에 50조 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 같은 방침에 구도심 공동화에 골머리를 앓던 지자체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자체 재원 부족

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지자체도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가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체 사업 3건, 5개 구청은 126건을 준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사업비 중 절반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올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0.7%로 전국 평균(47.18%)에도 못 미치며 일선 구청은 12.77%(남구)~20.34%(광산)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수십 억~수백 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부담률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고 부담분을 70~80%까지 늘려야 한다. 최근 정부의 내년 SOC 예산 일괄 삭감에 따라 직접탄을 맞은 광주·전남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까지 역차별을 받는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양대 노총 손잡았다

광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사업장 노동조합들이 10년 만에 손을 잡았다. 광주은행 노동조합·기아자동차지회·금속 금호타이어지회·전국전력노동조합 전남본부·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KT 노동조합·보해 노동조합 등 양대 노총 7개 사업장 노총들은 지난 8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 정착을 위한 함께 날자! 광주여!’ 행사를 갖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 지역 노조들이 자신들의 소속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구분하지 않고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뿐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의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장현 광주 시장은 “양대 노총이 광주 공동체 최대 현안인 광주

형 일자리에 함께 해 주실 실질적인 성공에 한 발짝 더 접근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더욱 힘을 모아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경영자에게 고임금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대신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민선6기 초반 지역사회로부터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정부의 올 추경예산 반영에 이어, 지역 노동계 지지까지 이어지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열망과 노동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와 양대 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협력 체계를 서두르길 바란다.

無 等 鼓

1984년 6월 10일, 남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군은 한 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화염과 함께 하늘로 날아오른 이 미사일은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먼저 발사된 또 다른 미사일을 16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미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이 소식을 전 세계에 주요 뉴스로 전달했다. 미사일 요격 실험의 성공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공격하는 적국의 핵미사일을 또 다른 미사일로 파괴하는 ‘별들의 전쟁’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별들의 전쟁’(Star Wars)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3년 3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선포한 전략방위 구상이다. ‘미국과 동맹국을 철의 장막 너머 소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주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악의 제국’으로 불렸던 소련과 그 동맹국들을 무너뜨린 것은 미국의 최첨단 요격 미사일이 아니었다. 소련은 미국발 ‘별들의 전쟁’에 맞서 군비 경쟁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고, 그 결과 국가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들었다. 때마침 유가마저 급

락, 그나마 소련 경제를 지탱해 주던 일 달러도 바닥을 드러내고 경제가 도탄에 빠지자 국민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소련의 거대한 사회주의 체제는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냉전 시대에 드러워진 철막의 장막을 걷어 낸 것은 무기가 아니라 빈곤에서 비롯된 내부의 압력이었던 셈이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1984년의 요격 실험은 거짓이었다. 미국은 당시 미사일 요격 실험이 성공하면 발사된 미사일에 추적 장치를 부착해 놓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요격은 아니었지만, 소련은 이 사실에 자극받아 방위산업에 돈을 퍼부었고, 이는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하면서 도발을 이어 가고 있다. 전 세계의 총격과 분노도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북한도 내부적으로 ‘말라 가는 돈줄’에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 가고 있다고 봐도 틀리진 않을 것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유언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절실한 이유다.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기 고



조 계 현  
광주 3·15의거 4·19혁명 국가유공자

금남로공원의 명칭을 ‘금남로 4·19공원’이나 ‘3·15 기념공원’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동구청 지명위원회에서 잠정 보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57년 전의 광주 3·15의거를 다시 떠올려본다. 지금의 광주 금남로공원의 앞 거리는 1960년 3·15 선거일 정오에 부정선거를 규탄한 1200여 광주시민의 ‘곡, 민주주의 장송’합성이 울려 퍼지고 경찰의 총기와 곤봉의 타격에 유혈이 낭자했던 현장이다. 이런 역사가 있기에 광주 금남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광장이며 성지다. 광주 3·15의거는 3·15 정·부통령 선거의 불법 부정을 규탄한 전국 최초의 항쟁이요 4·19혁명의 첫 봉화인데 이를 상징

금남로공원을 ‘3·15 기념공원’으로

하는 기념물 하나 없어 시민에게 망각되어 온 터에 금남로 공원의 명칭을 ‘3·15 기념공원’으로 하자는 의견은 당위성과 합리성을 갖는다. 국가보훈기분법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이 4·19혁명으로 통칭되고 있기 때문에 3·15면 어떻고 4·19면 어떠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3·15의거와 4·19혁명을 구별하고 있다. 광주 ‘민주주의 장송’ 대모가 부 정선거를 규탄한 전국 최초의 3·15의거라는 역사적 사실이 국민에게 망각되어 온 것은 의향 광주로서는 두고 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3·15 선거 당일 마산의 2차 야간 의거에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속출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광주의 3·15의거가 가려진데다 마산에서는 매년 3월15일에 희생자 추도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산이 3·15의거를 상징하게 되었지만 광주의 3·15의거가 갖는 의의와 위상은 마산이 대신할 수 없다. 광주는 3·15의거와 4·19혁명이 겹친 유일한 고장이다. 마산에서는 3·15의거, 서울·부산·창주 등 다른 지역에서는 4·

19혁명으로 단칭(單稱)되나 광주는 부정 선거를 최초로 규탄 항쟁한 ‘민주주의 장송’ 3·15 의거와 4·19혁명 3대 발상지다. 역사적인 2개 사건이 유일하게 병존한 곳이기도 하다. 마산에서 기념식의 격상이 아닌 기념일의 격상 요구를 국회의 결의로 정부에 청원하여 정부가 3·15의거(4·19혁명) 50주년(2010년)을 계기로 3·15 의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마산의 3·15의거 기념식만을 주관했다. 우리는 이에 항의했고, 정부는 광주 기념식을 광주시의 소관이라 했지만, 우리는 마산과 동격의 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3·15의거 없이 4·19혁명이 있었겠는가? 4·19혁명도 광주가 3대 발원지로 의의가 크다. 광주시에 4·19혁명을 상기시키는 기념비와 희생자 추모비, 기념회관과 생활관, ‘419로’가 있다. 하지만, 더 큰 규모의 기념사업을 희망하면서 국가적 상징을 갖는 광주의 3·15는 어디에도 증표하나 없이 망각되게 함은 의향 광주의 도리가 아니다. 광주 3·15의거의 현안이 금남로공원 앞 길일을 알면서 3·15 의외의 이름을 거명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광주의 3·15의거는 마산의 3·15의거와 동격의 국가적 사건이다. 광주 3·15의거는 국가보훈법과 민주화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국가지원 대상이다.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대구의 2·28, 대전 학생들의 3·8 공명선거 시위는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국가사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 광주에서는 법에서 명시한 자기 고장의 역사를 소홀히 한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광주시가 스스로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면서 광주의 의(義)와 기(氣)를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3·15의거를 기리고 상징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는 터에 바로 3·15의거 현장 앞에서 지켜왔던 터에 위치한 ‘금남로공원’을 ‘315의거’를 상징계 공간으로 삼는 일은 지당하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금남로공원을 3·15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4·19혁명사와 의향 광주시사(光州市史)를 아우르는 일이고 광주 동구구의 명예가 될 것이다. 또 광주 3·15의거를 기리는 일은 4·19혁명을 바로 세우고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우뚝 세우며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광주의 양심과 의기에 호소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